

의결권 행사에 관한 규정

2020.12.01 제정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(이하 “법”이라 함) 제87조 및 동법 시행령 (이하 “령”이라 함) 제89조, 제90조, 제91조에 의거하여 회사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기준, 방법, 절차 등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선관주의의무)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의 투자자를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.

제 2 장 행사기준

제3조(충실행사) ① 회사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여야 한다.

제4조 (중립적 투표)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립적 투표 (Shadow Voting)를 행하여야 한다.

1. 회사 및 회사와 령 제8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회사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령 제89조제2항에서 정하는 자가 당해 집합투자 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계열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경우
2. 당 해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회사와 계열회사 또는 회사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관계로서 령 제89조제3항에서 정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법인의 합병, 영업의 양도양수, 임원의 임면, 정관변경,

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(이하 “주요의결사항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집합투자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때에는 제3조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 다만, 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”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(이하 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”이라 한다)에 속하는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그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으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

1. 그 주권상장법인의 특수관계인(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” 제7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)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를 합하여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할 것
2. 회사가 법 제81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가목의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수에서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할 것

③회사가 령 제86조제1항1호 각 목에 따라 계열회사의 전체주식을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기준으로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각 계열회사별 주식의 비중을 초과하는 계열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중립적 투표(Shadow Voting)를 행하여야 한다.

④제2항의 규정은 법 제234조제1항에 의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5조(행사금지) 회사는 법 제81조제1항 및 제84조제4항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.

제6조(교차행사 및 면탈행위 금지) 회사는 제3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의결권을 교차하여 행사하는 등 제4조 제1항 또는 동조 제2항 또는 5조 규정의 적용을 면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 3 장 행사방법

제7조(행사주체) 회사는 직접 또는 수탁회사에 대한 운용지시를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며,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게 위임장을 제공하여 의

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에는 의안에 대한 찬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.

제8조(참석장 제공)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의사정족수 확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. 이 경우 의결권은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.

제9조(서면행사 등)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수단 등을 이용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제10조(불통일 행사) 회사는 각 집합투자재산 간에 이해상충관계가 존재하여 의결권을 통일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결권을 불통일하여 행사할 수 있다.

제 4 장 행사절차

제11조(주주총회 개최 파악) ①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주주총회 일시, 장소 및 의안 등을 행사 전에 충실하게 파악하여야 한다.
② 회사는 수탁회사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경우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도록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.

제12조(의사결정) ① 의결권의 행사여부, 내용 및 방법 등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주요 사항은 해당 종목분석 담당자의 의견을 기초로 운용팀장이 결정한다.
② 운용팀장 또는 해당 종목분석 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게 통지 또는 공고된 목적사항 이외에 의안과 관련한 추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③ 운용팀장 또는 해당 종목분석 담당자는 당해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이 집합투자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표이사, 운용팀장, 종목분석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의결권행사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한다.
④ 회사는 고객에 대한 수탁의무 (fiduciary duty)를 다하기 위하여 별첨자료와 같은 가이드 라인을 원칙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

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, 이러한 경우에는 별첨양식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대한 사유 및 내역을 기재하여 운용본부장 및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3조(위원회의 구성)

① 회사는 의결권행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안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의결권행사위원회

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운용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식담당 총괄임원이 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
1. 주식담당 총괄임원, 해당 종목을 보유한 부서의 운용 팀장
2. 준법감시인
3. 의안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지명하는 자

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 이외의 직원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14조 (의견청취 및 자료제출) 주식담당 총괄 임원은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재산 운용담당자, 외

부 전문기관 기타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,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 5 장 공시 등

제15조(의결권공시대상법인)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다.

제16조(공시) ① 회사는 직접 또는 사무수탁회사를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.

1. 법 제8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: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
2.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: 법 제87조 제7항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
3.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: 법 제87조 제7항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

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의결권 행사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하는 경우에

투자자가 그 의결권 행사 여부의 적정성 등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.

1.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회사의 내부지침
 2. 회사가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집합투자기구별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 수 및 증권예탁증권 수
 3. 회사와 의결권 행사 대상법인의 관계가 시행령 제8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
- ③ 법 제87조 제8항에 따른 의결권행사의 공시는 시행령 제91조 제2항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

제17조 (내부통제) 준법감시인은 회사의 의결권 행사가 관련 법규 및 이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점검한다.

부 칙

제 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